

경기인 등록규정

제 1 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이하 "본 협회"라 한다.)의 선수·지도자·심판·선수관리담당자의 등록과 활동 등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고 업무를 보다 합리적이고 통일성 있게 처리하며, 제반 사항을 명확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이 규정은 본 협회 '경기인 등록규정'이라 칭한다.(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기인"은 선수, 지도자, 심판, 선수관리담당자를 말한다.
2. "선수"는 대회참가 등 선수활동을 목적으로 협회에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3. "지도자"는 본 협회의 지도자 활동을 목적으로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4. "심판"은 본 협회의 심판 활동을 목적으로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5. "선수관리담당자"는 지도자 외에 선수들의 체력 및 건강을 관리하기 위해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6. "등록"은 본 협회의 선수·지도자·심판·선수관리담당자로 활동을 희망하여 정한 절차에 따라 경기인등록시스템에 등재하는 것을 말한다.
7. "등록변경"은 선수가 소속단체, 등록지 등의 경기인등록시스템에 등재된 사항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8. "경기인등록시스템"이라 함은 경기인 등록업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대한체육회가 운용하는 전산 프로그램을 말한다.
9. "활동"은 선수·지도자·심판·선수관리담당자로 등록한 사람이 일정한 자격을 갖추어 본 협회의 선수·지도자·심판·선수관리담당자로 각종대회 참가 등의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10. "소속단체"란 경기인이 활동을 하기 위해 소속된 단체나 기관을 말한다.
11. "이적동의서"는 선수가 소속단체를 변경할 경우에 변경 전 소속단체장의 동의를 표시하는 양식을 말한다.
12. "운동경기부"는 선수로 구성된 학교나 직장, 스포츠클럽, 동호인조직 등의 운동부를 말한다.

13. “직장운동경기부”는 직장의 장이 선수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는 운동경기부를 말한다.

14. “체육동호인부”는 생활체육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선수들로 구성된 운동부를 말한다.

15. “스포츠클럽”은 선수를 포함한 회원의 정기적인 체육활동을 위해 운영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16. “유급학생선수”라 함은 초·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사람 중 해당 학교급의 동일한 학년에 2년 이상 연속하여 재학중인 사람을 말한다.

17. “재수학생”이라 함은 각 급 학교를 졸업한 후 해당연도에 상급학교에 입학하지 않은 자를 말한다.

18. “관계단체”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를 말한다.

19. “학교운동부”란 소속 학생선수로 구성된 팀을 말한다.

20. “창단팀”이란 제12조 2에 따라 신규 등록한 팀으로 창단승인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팀을 말한다.

21. “공공스포츠클럽”이라 함은 「스포츠클럽법」 제2조 및 제6조에 따라 지정 또는 등록된 단체로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대한체육회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아 지역 주민 및 학생 선수의 스포츠 활동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22. “학교연계형 스포츠클럽”이라 함은 특정 학교의 학교운동부와 연계하여 학생 선수의 육성, 학교 체육시설의 활용, 전문지도자 배치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클럽을 말한다.

23. “지역거점형 스포츠클럽”이라 함은 지역 사회의 체육 시설을 기반으로 전문선수를 육성하는 단체를 말한다. 이는 개인사업자 또는 일반 법인 형태의 클럽이며, 학교 또는 교육청의 직접적인 관리·감독 범위를 벗어나 대표자의 책임하에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클럽으로 정의한다.

24. “상급종합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의료기관을 말한다.

② 이 규정에서 경기인 등록의 나이 기준을 연령으로 표시한 경우, “○○세 이상”이란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를, “○○세 이하”란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제4조 [규정 제·개정]

① 본 협회는 대한체육회 경기인 등록규정을 준용하여 야구·소프트볼 종목의 경기인 등록과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협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을 제정·개정하여 대한체육회(이하“체육회”라고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체육회는 제1항에 따른 협회의 경기인 등록규정에 정한 사항이 경기인의 등록이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그 밖에 불합리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협회에 이의 시정을 권고할 수 있으며, 협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따라야 한다.

제5조 [적용 범위]

① 이 규정은 본 협회에 등록된 경기인과 경기인의 등록·활동에 관련이 있는 자 및 단체 등에 적용한다.

② 생활체육목적부는 협회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등록을 완료(등록비 납부)해야만 시·군·구협회, 시·도협회, 협회가 주최·주관하는 리그 및 대회에 참가할 수 있다. (미등록 선수가 출전할 시 부정선수로 간주한다.)

제6조 [경기인등록시스템]

① 협회는 체육회가 경기인 등록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경기인등록시스템(이하 등록시스템)을 통해 경기인을 등록한다.

② 디비전·유청소년·KBSA리그 및 동호인 대회에 참가하는 경기인은 협회 통합정보시스템(<http://kbsa.or.kr/>)의 별도 운영 안내에 따른다.

③ 등록절차에 따라 등록시스템에 경기인으로 등록한 사람만이 경기인으로서 활동할 수 있다.

④ 등록을 희망하는 사람은 등록시스템을 통해 등록신청서를 작성하고 등록 안내에 따라 전산 및 서면 등록 절차를 진행한다.

⑤ 본 협회 및 시·도협회의 경기인 등록 및 활동업무에 관련된 직원은 경기인 등록 및 대회참가 등의 업무를 목적으로 경기인 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⑥ 경기인 등록 시 첨부하는 사진은 반드시 본인의 식별이 가능한 최근 사진이어야 하며, 대중문화예술인 또는 캐릭터, 사물 사진 등록 시 승인을 거부한다.

제7조 [등록·유효기간]

① 경기인의 등록은 수시 등록을 원칙으로 하되, 선수의 등록은 제15조[등록신청]에 따른다.

② 경기인의 등록 유효기간은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단, 학교 운동경기부 소

속 선수의 등록 유효기간은 익년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③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로 한다.

③ 다음 연도에 대한체육회장 및 협회장 선거의 선거인 후보자로 추천되어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경기인의 등록 유효기간은 해당 선거의 선거일까지로 한다.

제7조의 2 [등록절차]

① 본 협회의 경기인 등록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기인으로 등록을 희망하는 사람은 본 협회가 정한 바에 따라 소속 시·도협회를 통해 협회로 신청한다.

2. 시·도협회는 등록신청자의 경기인 결격사유를 심사한 후 등록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본 협회에 승인요청을 하여야 한다. 단, 시·도협회는 신청자에게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승인거부 후 신청자에게 통보해야 하며, 경기인에게 결격사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등록신청일로부터 15일이 지나도 승인요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승인요청한 것으로 본다.

3. 본 협회는 승인요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등록 신청자의 경기인 등록을 승인하고, 필요에 따라 전국규모연맹체 등에 통보한다. 단, 경기인에게 결격사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협회가 승인요청일로부터 15일이 지나도 승인하지 않는 경우에는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② 경기인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30조의4에 따라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을 이수해야한다.

③ 경기인은 한국도핑방지위원회가 제공하는 도핑방지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④ 경기인은 본인이 등록시스템을 통해 등록신청서, 스포츠인권서약서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동의서 등을 제출해야하며, 협회는 필요 시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별도로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의 3 [활동자격]

등록절차에 따라 경기인 등록을 완료한 사람만이 본 협회의 경기인으로서 활동할 수 있다.

제8조 [외국인등록]

외국 국적자의 경기인 등록에 대하여는 해당 국제연맹규정, 출입국관리법 등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본 협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허용할 수 있다.

제9조 [등록 결격사유 등]

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수로 등록할 수 없다.

1. 선수·심판·지도자·단체임원·선수관리담당자로서 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 제29조[징계 종류]에 따라 제명의 징계를 받은 사람

2. 관계단체로부터 제명의 징계를 받는 사람

3. 관계단체로부터 자격정지 징계를 받고 그 처분이 종료되지 않은 사람

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에 따라 아래의 조치를 받고 해당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단, 같은 조 제3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병과 시 중한 조치 적용

가.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 3개월

나.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의 금지 : 3개월

다. 학교에서의 봉사 : 5개월

라. 학내외 전문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 8개월

마. 사회봉사 : 8개월

바. 출석정지 : 10개월

사. 학급교체 : 10개월

아. 전학 : 12개월

5. 강간, 유사강간 및 이에 준하는 성폭력의 죄를 범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9호의 퇴학처분 조치를 받고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제9조 제1항 제4호 이외의 사유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9호의 퇴학처분 조치를 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관계단체가 주최·주관하는 경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승부조작에 가담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제1호, 제48조제1호 또는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죄를 범하여 유죄의 판결이 확정된 사람.

8. 관계단체로부터 해임 징계를 받고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지도자·심판·선수관리담당자로 등록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 관계단체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9. 관계단체가 주최·주관하는 경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승부조작에 가담하여 「형법」 제314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및 제48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11. 선수를 대상으로 「형법」 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를 저지른 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2. 관계단체로부터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
 13. 관계단체로부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 가. 폭력·성폭력
 - 나. 승부조작
 - 다. 편파판정
 - 라. 횡령·배임
 14. 관계단체로부터 해임 징계를 받고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③ 해당 연도에 동일 종목에서 선수와 심판으로 동시에 등록할 수 없다. 단, 생활체육

목적 등록은 예외로 한다.

제10조 [등록비징수]

협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소정의 경기인 등록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2장 선수 및 팀 등록

제11조 [등록 및 등록지]

① 선수로 활동하고자 하는 사람은 운동경기부, 스포츠클럽, 체육동호인부 등의 소속으로 매년 협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선수는 동일인이 제12조 제1항의 등록구분에서 두 개 이상의 부에 등록할 수 없지만, 서로 다른 종목 구분(야구, 소프트볼, 베이스볼5)에서 중복 등록이 가능하다.

③ 선수는 동일인이 같은 시·도(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 내에서는 여러 회원종목단체에 등록할 수 있다.

④ 선수의 등록지는 해당 선수의 소속 단체가 소재한 시·도로 한다.

⑤ 대학 운동경기부의 등록지는 대학의 본교와 분교가 서로 시·도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본교와 분교를 각각 별도의 팀으로 등록하거나 본교와 분교를 통합하여 하나의 시·도로 등록하되, 통합하여 등록할 경우 등록지는 해당 학교가 지정하는 시·도로 하고 통합할 경우 등록지 변경은 1회만 가능하다.

⑥ 방송통신대 및 원격대학의 운동경기부는 해당 학교가 지정하는 등록지로 등록할 수 있으며, 지정된 등록지는 등록일 또는 변경일로부터 4년 이내에는 변경할 수 없다.

제12조 [등록 구분]

① 본 협회는 목적 및 연령 등을 기준으로 하여 각 부를 둔다. 이때, 15세 이하 선수는 육성목적의 부로 등록하며, 16세 이상 선수는 전문체육목적과 생활체육 목적 중 하나의 부로 등록한다.

1. 육성목적

가. 12세 이하부

나. 15세 이하부

2. 전문체육목적

가. 18세 이하부

나. 대학부

다. 일반부

- 직장운동경기부
- 비인가학교 / 직업전문학교 / 평생교육원 / 대학원
- 독립야구단
- 협회 심사 단체

3. 생활체육목적

- 가. 18세 이하부
- 나. 대학부
- 다. 일반부
- 라. 동호인부

<전국규모연맹체 등록구분>

- 1. 리틀부
- 2. 여자부

② 협회는 제12조 제1항의 각 호의 연령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별도의 부를 둘 수 있다.

③ 전문체육목적 대학부는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대학에 재학중인 학생이 등록한다. 다만, 야구종목은 18세 이하부 선수로 등록한 사실이 있으며, 정규 대학 입시 요강에 따라 대학교에 입학해 재학중인 학생에 한한다.

④ 일반부는 기업체,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법인체, 시도체육회 및 시군구체육회에서 창단하여 활동하는 직장운동경기부, 비인가학교, 직업전문학교, 평생교육원, 대학원, 협회 심사단체 및 독립야구단을 포함한다.

⑤ 일반부 중 직장운동경기부는 시·도체육회, 기업체 등과 근로계약을 맺고 있는 직장운동부 소속 선수가 등록한다.

⑥ 협회 산하 전국규모연맹체는 연맹체 규정에 따라 해당 부로 등록할 수 있으며, 자체 등록 시스템 또는 별도의 규정을 정하여 소속 지도자 및 선수의 등록을 관리할 수 있다. 단, 협회 등록 구분에 따른 중복(이중) 등록은 허용하지 않으며, 중복(이중) 등록 시 양쪽 모두 무효로 한다.

제12조 2 [팀 등록]

- ① 협회에 등록하고자 하는 팀은 다음 각 호를 반드시 충족해야 한다.
 - 1. 팀 대표자(만 19세 이상의 성인이며, 팀 지도자와 겸직할 수 없음)
 - 2. 본 규정에 따른 결격 사유가 없는 지도자(감독) 1인 이상
 - 3. 본 규정에 따른 결격 사유가 없는 선수

4. 팀 창단 및 대회 참가 신청 최소 인원(야구종목만 적용)

| 종별 | 인원수 |
|---------|--------|
| 12세 이하부 | 10명 이상 |
| 15세 이하부 | 14명 이상 |
| 18세 이하부 | 18명 이상 |
| 대학/일반부 | 18명 이상 |

가. 최소 인원을 충족한 팀이 대회 중 선수 부상 등의 사유로 경기에 참가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해당 경기는 몰수경기 처리한다.

나. 창단팀은 창단승인일로부터 1년 간(다음 연도 포함) 상시 최소 인원을 유지해야 한다. 이때 등록 인원의 산정 및 확인은 대한체육회 경기인등록시스템에 등록 승인이 완료된 인원을 기준으로 한다. 협회는 정기등록 마감일 및 전국대회 참가신청 접수일을 기준으로 인원을 점검하며, 기준 미달 시 즉시 대회 참가를 즉시 불허하고 3개월 내 보완되지 않을 경우 해체된 것으로 간주한다.

다. 협회는 등록 선수의 실제 활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팀에 훈련 일지, 출석부, 선수활동 여부 문서 등의 실제 선수 활동 증빙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허위 보고 시 인원 미달로 간주한다.

5. 팀 창단 승인 신청 시 아래의 서류를 제출한다.

가. 제출서류 종류(학교운동부 7가지 / 스포츠클럽 9가지 서류 제출)

| 서류종류 | 학교팀 | 클럽팀 | 비고 |
|------------------------------|-----|-----|--|
| 창단 승인 신청 공문 | ○ | ○ | |
| 시·도협회(연맹) 창단동의서 | ○ | ○ | |
| 창단 운영위원회 회의록 | ○ | ○ | |
| 팀 운영 계획서 | ○ | ○ | |
| 운동장 현황 및 사용계약서 | ○ | ○ | |
| 지도자 등록 관련 서류 | ○ | ○ | |
| 예비 선수 명단 | ○ | ○ | |
| 사업자등록증 사업증 등록확인서 고유번호증 | X | ○ | - 3종류 서류 중 1개 제출 - 신청날짜 기준 4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인정 |
| 법인정관 | X | ○ | |

나. 제출서류 상세내용

| 서류 종류 | 충족조건 |
|-----------------|--|
| 창단 승인 신청 공문 | 대표자의 직인이 포함된 공식문서 |
| 시·도협회(연맹) 창단동의서 | 협회(연맹)회장 직인이 포함된 공식문서 |
| 창단 운영위원회 회의록 | 팀 창단이 결정된 운영위원회 회의록 |
| 팀 운영 계획서 | 팀소개, 채용조달 계획, 선수수급계획, 합숙훈련 실시계획, 합숙소 유무, 안전관리계획 및 책임자 지정계획 |

| | |
|------------------------------|---|
| 운동장 현황 및 사용계약서 | -운동장 사진 포함 -운동장의 주소지와 규격 및 사용기간이 명시된 사용 계약서 제출 (계약서 제출이 어려울 경우 창단 승인 신청 연도 연말까지 해당 운동장 사용을 허가받은 별도 문서로 대체가능) |
| 지도자 등록 관련 서류 | 클럽팀의 경우 스포츠윤리센터에서 발급한 징계사실유무확인서 추가 제출 |
| 예비 선수 명단 | 동 규정 제12조 2 5.기준 |
| 사업자등록증 사업증 등록확인서 고유번호증 | 법인 정관 및 사업자 등록증 제출 -학교운동부: 학교법인 -스포츠클럽: 재단법인, 사단법인, 주식회사, 협동조합, 사회적기금, 공공기업, 법인으로 보는 단체 형태 모두 인정 ◆법인 성격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사업자등록증 상에 스포츠(체육) 또는 야구와 무관한 업태 및 종목이 기재된 법인은 승인 불가 ◆팀은 사업자 등록 소재지의 시도협회 등록을 원칙으로 함. |
| 법인정관 | 해당 법인의 정관 사본 제출 |

② 협회는 필요시 팀에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스포츠클럽 등록시 관련 업종(용품, 시설, 학원 등)의 명의로 팀명을 등록할 수 없다.

④ 팀명 등록은 다음 각 호를 적용한다.

1. 기존 등록 팀명과 해체 팀명 등은 사용할 수 없다(창단 팀의 경우 등록시스템에 이미 등록된 팀명은 사용할 수 없다. 해당 팀명이 현재 해체되어 실제 사용되는지 여부는 사전에 협회에 승인을 받도록 한다)

2. 영문 팀명의 경우 학교, 지역 등 관련 공식 기관의 영문 표기법을 준용한다.

3. 특수문자 및 부호 등은 사용할 수 없다.

4. 스포츠클럽의 경우 팀명은 제출한 법인 또는 사업자등록증 팀명과 일치해야 한다.

5. 지역거점형 스포츠클럽의 경우 거점 이동에 따른 팀명 변경을 1회에 한해 승인한다.

⑤ 생활체육목적의 등록구분으로 등록하는 선수는 해당 팀의 연고지 선수로 구성할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합숙소 또는 기숙 형태의 운영을 금지한다.

⑥ 동일법인 중복 팀 운영 제한

- 1개의 법인은 12·15·18세 각급별로 한 개의 팀만 운영할 수 있다.

⑦ 대학부로 등록하는 팀은 대학 정규 학과 학생으로 구성된 팀이며, 학교 및 학과의 교육부 인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체육특기자 입학(선발) 전형 등을 추가 제출한다.

⑧ 현재 등록되어 있는 지도자(감독)이 타 팀 창단 승인 과정에 개입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해당 창단팀의 승인을 즉시 보류 또는 취소하며, 해당 지도자는 향후 2년 간 창단팀 지도자로 등록할 수 없다.

⑨ 팀 등록 시 지도자 중 감독이 없는 팀은 등록을 유보한다.

⑩ 본 협회에 등록한 팀 중 선수가 부족한 팀은 사유를 명시하여 본 협회에 등록 유보를 신청할 수 있으며, 연속하여 2년을 유보하는 경우 팀이 해체된 것으로 간주한다. 창단팀은 등록 유보를 신청할 수 없으며, 창단승인일로부터 1년동안 팀 창단 최소인원을 유지하지 않으면 팀이 해체된 것으로 간주한다.

⑪ 등록 유보란 팀의 사정으로 지도자 및 선수 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나 협회에 등록유보 공식문서를 제출한 경우 또는 동 조항 ①의 기준에 미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⑫ 본 협회에 등록한 팀이 해체하는 경우에는 사유를 명시하여 본 협회에 서면 통지하여야 하며 등록 유보없이 해당 정기등록 2년 미등록팀은 정기등록 마감일 기준으로 해체된 것으로 간주한다.

⑬ 본 협회에 등록한 팀 중 해체된 팀은 해체 서면 통지일로부터 해당 법인으로 2년 내에 재창단할 수 없다.

⑭ 본 협회로부터 창단 승인을 통보받은 팀은 통보일 기준 3개월(90일, 통보일 제외) 안에 등록시스템을 통해 전산 등록을 완료하고 협회에 등록신청 서류를 접수해야한다. 기한 내 등록 신청 서류가 접수되지 않을 경우, 창단 승인은 자동 취소되며, 해당 법인으로 2년 내에 재창단할 수 없다.

⑮ 창단 승인은 협회의 고유 권한이며, 전국규모연맹체(리틀, 대학, 여자 등)에 한하여 해당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제12조 3 [18세 이하부 팀의 대회참가 권리 승계]

① 18세 이하부 팀이 학교의 유형 전환, 법인격의 변경 등 행정적 사유로 이관·승계하고자 할 경우 협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지역거점형 스포츠클럽 및 개인사업자 형태의 모든 팀은 운영 주체의 변경, 법인격 전환, 명칭 변경, 연고지 이전 등 어떠한 사유로도 기존 팀의 지위나 대회 참가 권리(주말리그 참가권 포함)를 타인에게 이관하거나 승계할 수 없다. 운영 형태나 주체의

변동이 발생할 경우, 해당 팀은 제12조의 2에 따른 신규 창단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고교야구 주말리그 및 전국대회의 참가 자격을 승계한 것으로 본다.

1. 학교 운동부 간 또는 학교 운동부와 학교연계형 스포츠클럽(공공 스포츠클럽) 간, 학교연계형 스포츠클럽(공공 스포츠클럽) 간의 공식적인 이관 및 승계

2. 승계신청 시점 기준, 졸업 예정자(3학년)를 제외한 저학년(1, 2학년) 재적 선수의 80% 이상이 승계된 팀으로 등록을 완료한 경우

3. 관할 교육청, 관할 시도 등 공공기관의 운동부 이관·승계 승인 문서 및 양교 간의 합의 문서가 제출된 경우

4. 원칙적으로 동일 시·도 지역 내에서의 이전을 의미하며, 타 시·도 이동 시에는 해당 시·도 협회의 동이가 선행되어야 함

④ 제3항의 요건을 충족하여 승계가 승인된 팀은 제12조의 2 ①항 4호 나목을 적용받지 아니하며, 즉시 기존 팀의 지위를 유지하여 고교야구 주말리그에 참가할 수 있다.

⑤ 단순한 팀 명칭 변경이나 선수 수급을 목적으로 한 변칙적 승계임이 확인될 경우 협회는 승인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팀은 제12조의 2에 따른 신규 창단 절차를 따라야 한다.

제13조 [학제와의 관계]

① 학교 운동경기부와 스포츠클럽에 소속된 선수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여 제12조의 등록구분에 따른 연령과 학제가 다른 경우에는 연령에 따라 등록하고, 소속 학교의 학제 기준의 부로 활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연령 차이가 1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유급(예)에 대한 대회 출전 제한을 받을 수 있다.

1. 가정빈곤의 사유로 부득이 유급 또는 재수한 경우(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제출)

2. 부상, 질병으로 치료를 받고 유급한 경우

3. 수업일수가 부족하여 유급(학업유예)이 학교에서 결정된 학생의 경우

4. 입학연기자 또는 조기입학자로서 생활기록부를 제출한 경우

5. 학교폭력 등으로 피해를 받아 유급한 경우(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또는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의 결과통보서 등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

6.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연령과 학제가 다른 것이 인정되어 스포츠평정위원회에서 구제결정을 하는 경우

② 학제에 소속되지 않은(홈스쿨링 등) 선수는 등록 구분별 최초 등록 시 협회가 정한 학년으로 등록하고 등록 구분별 연령이 1년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에서 연령에 따라 등록한다.

③ 소속 학교의 출석일수 부족에 따른 학업 유예 결정 시, 생활기록부의 학적 기록 상에 유예 일자가 특정되지 않을 경우, 학교 운동경기부 소속 선수의 등록 유효기간인 '2월 말일을 기준으로' 대회 출전 제한을 적용한다.

④ 학교 운동경기부 소속의 선수가 등록구분에 따른 등록에도 불구하고 학제 및 연령으로 인하여 대회참가 구분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에는 각 대회 참가요강에 따른다.

⑤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교 졸업예정자의 상급학교 진학 또는 취업에 따른 등록은 해당 학교 급의 최종학년도 졸업 또는 자퇴 이후로 한정한다. 단, 대학졸업예정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졸업한 것으로 본다.

제14조 [등록 자격 및 범위]

① 대학부는 제12조 제2항에 따라 각기 다른 대학을 혼합하여 등록하거나, 동일 재단 또는 같은 구내 학교를 혼합하여 등록할 수 없다.

② 전문체육목적으로 등록한 이력이 있는 사람이 휴학 중이거나 해외유학중인 경우 해당 기간 동안 등록을 할 수 없다. 다만, 아래의 각 호의 경우 협회가 등록에 관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 각급 국가대표 선수활동을 위한 경우
2. 특별히 선수육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③ 비인가 학교 및 직업전문학교 소속의 선수는 제12조의 대학부를 제외하고 등록 구분에 따라 등록하고, 대학원 및 평생교육원 소속 선수는 일반부로 등록한다.

④ 전문체육목적으로 등록한 이력이 있는 사람이 현역 병(兵, 전환복무 포함)으로 복무하는 경우 대학 또는 직장운동경기부 소속 선수로 등록이 불가하며, 생활체육목적으로도 등록할 수 없다. 다만, 사회복무요원은 병무청으로부터 배정된 소속단체로 등록할 수 있다.

⑤ 대학원 재학생 및 학생신분(제14조 제6항 제외)이 아닌 19세 이상선수는 일반부로 등록한다.

⑥ 18세 이하부 선수가 직장운동경기부에 재직 중에 대학교에 진학한 사람은 본 협회의 결정에 따라 제12조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일반부로 등록한다. 단, 대학 재직 중 직장운동경기부와 계약이 만료된 후에는 대학부로 등록변경 할 수 있다.

제15조 [등록신청]

선수 등록신청은 정기등록과 추가등록으로 구분한다.

- ① 경기인은 반드시 “등록시스템”을 통해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 ② 정기등록은 매년 2월부터 3월 중 협회가 지정하는 기간까지 실시한다.

③ 추가등록은 세부종목(야구·소프트볼)을 구분하여 실시한다.

1. 야구 종목 15세 이하부는 8월 15일부터 8월 31일까지, 18세 이하부는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실시한다.

2. 소프트볼 종목은 3월 31일 이전까지 등록신청함을 원칙으로 하며, 시기에 상관없이 추가등록 할 수 있다.

④ 지도자를 포함한 임원은 정기 등록 이후 수시로 등록 및 등록변경할 수 있다.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매년 11월 30일 이전에 수시로 등록신청 할 수 있다.

1. 12세 이하부 또는 본 협회에 최초로 선수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

2. 창단팀(창단일로부터 1년 미만) 소속으로 등록하려는 경우

3. 군 제대 후 원 소속으로 복귀하는 경우 (전역증 및 재학증명서 첨부)

4. 등록선수 인원이 30명 미만인 팀의 경우 등록선수 인원이 30명이 될 때까지

5. 소속 팀이 해체 또는 등록유보된 경우[소속단체장이 협회로 팀해체 또는 등록유보 공식문서(해체일 또는 등록유보일 명시)를 제출한 경우]

6. 징계 및 활동 제한 기간이 종료된 경우 : 제9조 및 제18조에 따른 결격사유 또는 활동 제한 기간이 해당 연도 등록 기간(정기·추가) 외의 시점에 종료된 선수

7. 부상 유급 구제 대상자 : 제18조 제11항에 따라 상급종합병원 진단서를 제출하여 활동 제한 예외 승인을 받은 선수

⑥ 선수 등록을 희망하는 사람은 등록신청자 본인이 본인인증 수단을 거쳐 직접 등록 시스템을 통해 신청을 한다.

제16조 [등록변경]

① 선수가 소속 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등록변경을 해야 하며, 이적동의서를 소속 시·도협회를 통해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등록변경을 위한 이적동의는 변경 전 소속단체의 장이 행한다. 다만,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전 소속 시·도협회장이 동의할 수 있다.

1. 해당 학교에 운동경기부가 없지만 학교 소속을 하고 있는 경우

2. 소속단체가 이전 등의 사유로 등록지만 변경된 경우

3. 이적동의서 발급 주체가 불분명하다고 협회가 판단하는 경우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적동의서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1. 12세 이하부 선수의 경우

2. 동일 시·도 내에서 진학·전학하는 선수의 경우

3. 동일 시·도 내 운동경기부가 없어서 타 시·도로 입학 또는 전학하는 경우

4. 운동경기부를 해체하고 해당 시·도 내 동일 종목의 운동경기부 정원이 부족하여 타 시·도의 학교 운동경기부로 팀을 변경하는 선수일 경우
5. 15세 이하부 및 18세 이하부 선수의 보호자가 생계유지를 위하여 거주지를 이전하여 가족구성원 모두가 전·출입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6. 18세 이하부 선수가 대학에 진학할 경우
7. 18세 이하부 및 대학부의 선수가 졸업 후 직장운동경기부 소속의 일반부로 등록을 하는 경우
8. 군 입대 및 제대로 인하여 소속이 변경되는 경우
9. 소속단체의 해체 및 소속한 직장운동경기부와 계약이 만료된 경우
10. 선수가 등록을 하지 않고 있다가 마지막 등록일(등록신청일을 등록일로 한다)을 기준으로 만 2년이 지난 후 새로이 등록하는 경우
11. 생활체육을 목적으로 등록한 선수가 이적하는 경우

제17조 [선수 구제]

- ① 선수가 소속단체장에게 이적동의서 발급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속단체장이 특별한 사유 없이 이적동의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 선수는 본 협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고, 협회는 구제신청 접수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소속단체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이적동의서 발급제시 의견에도 불구하고 해당 소속단체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내에 이적동의서 발급하지 않을 경우, 해당 전문선수는 본 협회에 이적동의서 없이 등록변경을 신청할 수 있으며, 협회는 등록 변경된 사실을 소속단체장 및 시·도협회장과 구제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등록된 선수가 활동에 있어 이 규정 및 특별한 사유로 부당하게 활동에 제한을 받는 경우,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구제결정을 할 수 있다.

제18조 [활동 제한 및 예외]

- ① 선수의 각종 대회 참가를 위한 소속 학교 및 단체의 최소 재적기간을 협회의 실정에 따라 정할 수 있다. 다만, 각급 학교 1학년 또는 소속단체 1년차와 해외유학한 사람이 원 소속으로 복귀하는 경우에는 3월 말 기준으로 대회에 참가할 수 있다.
- ② 협회에 선수 활동 포기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해당 연도 등록내역 삭제를 요청한 선수는 새로이 선수등록을 한 날(등록 서류 발송일 기준)로부터 1년이 경과한 때부터 선수 활동을 할 수 있다. 단, 육성목적으로 등록한 선수와 생활체육목적으로 등록한 선수의 경우 예외로 한다.

③ 본 협회가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 없이 선수등록을 2년 이상 하지 않은 사람은 새로이 선수등록을 한 날(등록서류 발송일 기준)로부터 1년이 경과한 때부터 선수 활동을 할 수 있다. 단, 대학부, 일반부는 본 조항을 적용하지 않으며, 12세 이하부, 15세 이하부, 생활체육목적으로 등록된 이력은 선수활동 제한 기준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④ 본 협회에 등록된 대학부, 18세 이하부 졸업학년도 선수만이 국내·외 프로구단 입단과 관련한 접촉을 할 수 있다. 단, 국내 프로야구 신인 지명 이전에 국내·외 프로구단이 직·간접적으로 실시하는 메디컬 체크와 훈련에 참가할 수 없으며, 선수, 선수의 법정대리인, 소속 학교 감독, 코치 등이 계약과 관련해 구체적인 금액, 조건 등에 대하여 구단과 논의할 수 없다. 4년제 대학의 2학년에 재학중인 선수는 본인 의사에 따라 국내 프로구단 신인지명에 참가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하고 프로구단과 입단 협의 또는 가계약한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선수의 자격을 즉시 유보하고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제재할 수 있다.

⑤ 프로 구단에 입단 또는 등록하였던 자는 선수로 등록할 수 없다.

[국군체육부대, 독립야구단, 동호인부, 타 종목(소프트볼, 베이스볼5)의 등록은 가능하며, 직장운동경기부는 협회가 팀 창단과 육성에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등록 가능 인원 수 등을 별도로 심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⑥ 선수가 징계를 받은 경우 징계에 따른 활동 제한을 한다.

⑦ 야구종목의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수활동(대회출전 제한)의 제한을 받는다.

1. 활동 제한기간은 표에 명시된 기준으로 산정된다.

| 등록구분 | 세부내용 | 선수활동 제한기간 |
|---------|---|--------------|
| 12세 이하부 | · 타 시·도 이적 · 동일 시·도 이적 | 3개월 |
| 15세 이하부 | · 타 시·도 이적 | 1년 |
| | · 동일 시·도 이적 · 동일 종별의 등록팀 수가 적은 시·도로 이적 | 6개월 |
| 18세 이하부 | · 타 시·도 이적 · 동일 시·도 이적 | 6개월 |

* 공통사항 : 기존 재적학교장 또는 단체장의 이적동의서 첨부 필수
제한기간 산정은 이적팀에 전입한 날(생활기록부 기준)으로부터 산정
학교 전입이 없는 경우 각 소속 시도협회의 선수 팀소속 변경 공문발송 일자 기준으로 산정
지역을 거점으로 하는 팀으로 소속(등록)을 변경할 경우 해당 지역의 학교 전입일(생활기록부 기준)로부터 산정
(* 이 때 기준일 산정은 앞선 날짜로 한다.)

2. 15세 이하부의 등록 선수 수가 30명 미만인 팀으로 이적할 경우는 이적 선수를 포함한 등록선수 수가 30명이 될 때까지 1호를 적용받지 않는다.

3. 18세 이하부 협회 등록팀 수가 1팀인 시·도로 이적할 경우는 해당 팀의 등록 선수 수가 30명이 될 때까지 1호를 적용받지 않는다.

4. 소속 팀이 해체하여 팀 해체 또는 등록유보 공식문서를 협회로 제출한 이후 팀을 이적하는 경우는 1호를 적용받지 않는다.

5. 15세 이하부, 18세 이하부에 등록한 선수가 졸업학년(3학년)에 등록 팀을 변경한 후 유급을 하였을 경우 복학년도에는 대회에 출전할 수 없다.

6. 본 협회에 등록된 12세·15세·18세이하부 선수가 소속 학교에서 학업유예, 휴학한 경우, 해당 선수는 등록 선수 수에서 제외한다. 12세·15세·18세이하부 선수는 유급일(같은 급 학교에서 동일 학년에 2년 연속으로 등록)로부터 만 1년 경과 후 모든 대회(시도 협회 주최, 본 협회 주최 및 주관)에 참가할 수 있다. (단, 소속 학교에서 학업유예, 휴학 절차가 종료된 후 14일 이내에 생활기록부 및 관련 서류를 소속 시·도 회원단체를 경유하여 본 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고 대회 참가 및 경기 출전 시 해당 시·도종목단체, 지도자(감독)와 선수는 스포츠공정위원회에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 심의한다.

7. 18세 이하부 2, 3학년 선수가 부상 또는 질병으로 유급(학업유예)으로 상급종합병원에서 발생한 6개월 이상의 치료 또는 재활이 명시된 진단서 또는 수술기록지를 제출한 경우 별도의 심의 없이 진단 기간 종료일 이후에 즉시 모든 대회에 참가할 수 있다. 단, 만 18세 이하인 자(해당 연도 12월 31일 기준)에게만 적용한다.

가. 본 조항을 적용받는 선수는 진단서 상의 최소 치료(재활)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만 경기 출전이 가능하다. 만약 진단 기간 종료 전 경기에 출전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소속 팀 및 선수에 대하여 '부정선수 출전'으로 스포츠공정위원회에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 심의 한다.

나. 당해 연도 7월 20일 이후 개최된 전국대회의 참가신청서에 등록되었거나 실제 경기에 출전한 이력이 있는 선수는 당해 연도 시즌을 종료한 것으로 간주하여 본 규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⑧ 학제에 소속되지 않은 선수는 제13조 2항에 의거, 협회가 정한 학년을 기준으로 동일한 학년에 2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할 경우 유급(학업유예) 선수와 동일하게 규정을 적용한다. 단, 학제에 소속되지 않은 선수의 유급일은 3월 1일로 일괄 적용한다.

⑨ 협회는 전문체육목적으로 등록한 이력이 있는 선수에 대해 생활체육 대회의 참가요강으로 이에 따른 활동제한을 할 수 있다.

⑩ 생활체육목적부는 시·군·구협회, 시·도협회, 협회가 주최하는 공식대회에는 하나의

팀만 등록하여 참가할 수 있다. 생활체육목적부의 팀 이적은 연간 1회에 한하여 허용되며, 최종 이적 승인일로부터 3개월 간 활동이 제한된다.

제19조 [경기인 실적관리]

경기인선수의 실적관리는 경기실적 관리 및 발급 지침에 따른다.

제20조 [지원서 관리]

① 선수가 직장운동경기부에 취업하여 선수로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는 본인이 지원하거나 소속단체장이 해당자를 추천할 수 있다. 다만, 지원서를 접수받은 직장운동경기부에 취업이 되지 않았을 때에는 타 직장운동경기부에 재추천할 수 있다.

② 협회는 취업에 이용되는 지원서를 체육회로부터 지급받아 관리하며 취업하고자 하는 선수에게 본인의 서명날인 후 지급한다.

③ 선수가 취업을 위하여 소속단체장에게 추천을 신청하였을 경우, 소속단체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5일 이내에 추천하여야 한다.

④ 취업 추천서를 발급한 소속단체장은 추천서 발급일로부터 7일 이내에 동 추천서 사본을 본 협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협회는 이를 관련 직장운동경기부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3장 지도자·심판·선수관리담당자 등록

제21조 [등록자격]

① 지도자로 활동하고자 하는 사람은 매년 지도자 등록을 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소지해야 한다.

1. 문화체육관광부 발행 체육지도자 자격증 (감독/코치)
2. 교육부 발행 정교사 자격증 (부장/감독/코치)

② 지도자는 본 협회 등록팀 중 한 개의 팀으로만 등록이 가능하며, 지도자 등록 구분(감독, 코치, 부장)을 중복해 등록할 수 없다. 단, 소프트볼팀(학교 포함) 육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등록 허용 여부를 본 협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

③ 심판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사람은 매년 심판 등록을 한다.

④ 선수관리담당자로 활동하고자 하는 사람은 매년 선수관리담당자 등록을 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소지해야 한다.

1. 의료법에 따른 의사, 한의사, 간호사
2.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리치료사

3.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지도자

제22조 [지도자 등록 자격]

지도자의 등록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야구

- 야구 2급 이상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증 소지자

2. 소프트볼

- 1) 2급 이상 소프트볼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증 소지자(전 종별)

- 2) 2급 이상 소프트볼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증 소지자(12·15세이하부 및 생활체육목적 전 종별)

3. 스포츠클럽(야구)

- 1) 야구 2급 이상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증 소지자
- 2) 야구 2급 이상 생활체육지도사 자격증 소지자
- 3) 유소년·노인 체육지도사 자격증 소지자

4. 야구·소프트볼 부장은 해당 교육청에 등록된 자로서 교사자격증 소지자

5. 각 종별 지도자 중 코치 등록 제한 인원은 다음과 같다.

| 종별 | 코치 등록 인원 |
|-------------------|----------|
| 12세 이하부 | 2 |
| 15세 이하부 | 3 |
| 18세 이하부, 대학부, 일반부 | 4 |

제4장 징계조치

제23조 [제한조치]

① 이 규정 제9조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 제1호~ 제11호의 경기인 등록 결격사유를 위반하여 등록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격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1년이상 5년 이하의 등록금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협회는 제9조(등록 결격사유 등) 제1항 제4호, 제5호 및 제2항 제1호~제11호를 위반한 사람에 대한 징계기간 등을 결정하기 위해 해당단체의 스포츠공정위원회 상정하고 그 절차에 따라 조치한다.

제24조 [위반자 조치절차]

교육청 등 학교관련 단체는 학교운동부의 선수·지도자·선수관리담당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체육단체 차원의 징계를 체육회에 건의할 수 있다.

제25조 [등록해지 및 취소]

① 본 협회는 경기인이 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 제29조에 따라 제명 또는 자격정지의 징계를 받은 경우 경기인 등록을 즉시 해지하여야 한다.

② 본 협회는 선수가 등록이 완료된 경우, 협회 주최 대회 경기 출전하지 않은 선수에 한해서만 협회 홈페이지 선수 등록 취소 신청서 등 양식을 제출하여 그 등록을 취소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회는 당월 1일부터 말일까지 신청 건에 대하여 익월 일괄 처리한다.

③ 선수가 해당 연도 등록을 취소하더라도 등록 취소 전 대회출전에 대한 경기기록은 삭제되지 않는다.

부 칙 (2017.07.18.)

[시행일]

- ①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에서 정한다.

부 칙 (2019.02.22 제8차 이사회)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2019년 2월 22일)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심판등록에 관한 규정 제27조 2항, 제30조 2항, 제32조 1항, 제34조 2항, 제35조 2항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 ① 종전 규정에 따라 해당 부별로 등록한 전문선수는 제12조 규정 개정의 등록구분에 해당하는 부에 등록한 것으로 본다.
- ② 이 규정이 개정되기 전에 해당 부별로 유급 선수 및 연령 초과하여 등록한 사람은 제12조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2019.11.13. 제10차 이사회)

[시행일]

- ①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에서 정한다.

부 칙 (2020.11.26. 제14차 이사회)

[시행일]

- ①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에서 정한다.

부 칙 (2021. 3. 4. 제1차 이사회)

[시행일]

- ①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에서 정한다.

부 칙 (2021. 7. 2. 제3차 이사회)

[시행일]

- ①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에서 정한다.

부 칙 (2022. 3. 23. 제7차 이사회)

[시행일]

- ①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에서 정한다.

부 칙 (2023. 2. 24. 제11차 이사회)

[시행일]

- ①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에서 정한다.

부 칙 (2023. 7. 10. 제12차 이사회)

[시행일]

- ①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에서 정한다.

부 칙 (2023. 12. 18. 제14차 이사회)

[시행일]

- ①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에서 정한다.

부 칙 (2024. 8. 23. 제18차 이사회)

[시행일]

- ①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에서 정한다.

부 칙 (2025. 1. 21. 제21차 이사회)

[시행일]

- ①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에서 정한다.

부 칙 (2025. 11. 25. 제3차 이사회)

[시행일]

- ①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에서 정한다.

부 칙 (2026. 2. 26. 제5차 이사회)

[시행일]

- ①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에서 정한다.

경기인 스포츠 인권 서약서

- 선 수 용 -

나는 대한민국 선수로서 체육계 현장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와 (성)폭력 행위 등을 철저히 배격하고, 모두의 인격이 존중되는 스포츠 현장을 만들기 위해 동료들과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하나, 나는 동료 선수들을 향해 어떠한 형태의 폭력과 폭언도 행사하지 않습니다.

하나, 나는 동료 선수들에게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 나는 (성)폭력으로부터 동료 선수들을 지키겠습니다.

하나, 나는 동료 선수들의 인격과 사생활, 자아실현을 존중하겠습니다.

하나, 나는 스포츠계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가혹행위에 대해 다시는 눈 감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소속 :

성명 :

(서명)

경기인 스포츠 인권 서약서

- 지도자 및 선수관리담당자용 -

나는 선수 성장의 조력자이자 동반자로서, 인격 존중과 상호 신뢰가 결여된 상태에서 행하는 과도한 훈련, 또는 이 과정에서 행해질 수 있는 폭력 행위 등을 철저히 배격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하나, 나는 선수 지도에 있어 어떠한 형태의 폭력과 폭언도 행사하지 않습니다.

하나, 나는 선수에게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 나는 (성)폭력으로부터 선수를 지키겠습니다.

하나, 나는 선수의 인격과 사생활, 자아실현을 존중하겠습니다.

하나, 나는 스포츠계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가혹행위에 대해 다시는 눈 감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소속 :

성명 :

(서명)

경기인 스포츠 인권 서약서

- 심 판 용 -

나는 공정하고 깨끗한 스포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현장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와 불합리한 행위를 철저히 배격하고, 경기인의 인권 존중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하나, 나는 스포츠 현장에서 어떠한 형태의 폭력과 폭언도 행사하지 않습니다.

하나, 나는 선수에게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 나는 (성)폭력으로부터 선수를 지키겠습니다.

하나, 나는 선수의 인격과 사생활, 자아실현을 존중하겠습니다.

하나, 나는 스포츠계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가혹행위에 대해 다시는 눈 감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소속 :

성명 :

(서명)